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여 객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제21조의8 신설)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함

나.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기준 등 마련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신설)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보조금 지급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조금 지급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범위(제21조의10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등 보조금 지급주체가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함

라.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2, 제21조의13 신설)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없이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4 신설)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없이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등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4~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을 각각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1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급 대상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구매한 유류를 포함한다)가 구매한 유류일 것
2.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등(“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으로 유류를 구매할 것. 다만, 유류구매카드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
 9.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대리운전 신고를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부담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를 통하

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7호단서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6(중전의 제21조의5)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의7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천연가스일 것
2.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충전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연료를 구매할 것
 6. 천연가스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천연가스 단가 등이 실제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등(“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으로 연료를 구매할 것. 다만, 유류구매카드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연료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
 9. 그 밖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②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연료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연료를 충전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④ 유류구매카드로 천연가스를 구매한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을 청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급요건

을 심사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7호단서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급 대상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구매한 수소를 포함한다)가 구매한 수소일 것
2. 제21조의8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수소를 직접 충전받

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연료를 구매할 것
 6. 수소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수소의 단가 등이 실제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등(“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으로 연료를 구매할 것. 다만, 유류구매카드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연료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
 9. 그 밖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②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연료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수소 연료보조금은 연료를 충전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대리운전 신고를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유류구매카드로 수소를 구매한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을 청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7호단서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24조 및 제8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 및 취소·정지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제21조의11(중전의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7항”을 “법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① 법 제51조의4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수소판매사업자로부터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여 유류구매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법 제50조제7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한 수

소 연료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12의 개정규정 시행 전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를 따른다.

제3조(천연가스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13의 개정규정 시행 전 천연가스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3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 ----- ----- ----- ----- -----.		
<u><신 설></u>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급 대상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구매한 유류를 포함한다)가 구매한 유류일 것 2.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
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
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
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발행
한 신용카드 등(“이하 유류구
매카드”라 한다)으로 유류를
구매할 것. 다만, 유류구매카
드 분실·훼손·유효기간 만
료 등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
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토교
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

9.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대리운전 신고를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부담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5(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신 설>

④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7호 단서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

 -----.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0조

제6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천연가스일 것
2.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충전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연료를 구매할 것
6. 천연가스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천연가스 단가 등이 실제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등(“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으로 연료를 구매할 것. 다만, 유류구매카드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연료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

9. 그 밖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연료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

<신 설>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연료를 충전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유류구매카드로 천연가스를 구매한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을 청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7호단서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

<신 설>

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
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
급기준 등) ① 법 제50조제7항
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
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
급 대상을 달리 하는 경우에
는 지급대상자가 구매한 수소
를 포함한다)가 구매한 수소
일 것

2. 제21조의8에 따른 운송사업
자로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
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수소를 직접 충전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연료를 구매할 것
6. 수소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수소의 단가 등이 실제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등(“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으로 연료를 구매할 것. 다만, 유류구매카드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연료

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
동차가 아닐 것

9. 그 밖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연료의 양
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소 연료보조금은 연료를
충전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
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
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으
로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대리운전 신고를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유류구매카드로 수소를 구매
한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
를 통하여 수소 연료보조금 지
급을 청구하고, 특별시장·광역

<신 설>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7호단서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24조 및 제8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 및 취소·정지에 관한 자료

제21조의6(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
----- 법 제50조제9항-----

-----.

1. 2.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

<신 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

<신 설>

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①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수소판매사업자로부터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여 유류구매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5. 법 제50조제7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24